

## 法齒學에 對하여 (I)

서울대학교 齒科大學 口腔診斷學教室

國立 科學搜查研究所 法醫學科

金 鐘 悅

醫學知識乃至齒科醫學知識을 法律的인 問題의 解決을 爲하여 活用하게 되는 事例는 許多하며 이에 따라 齒科醫師의 齒科醫學의 證言을 비롯하여 그들의 診斷檢案 및 法齒學의 諸鑑定이 要求되는 境遇는 臨床齒科開業醫, 齒醫學者 諸賢들이 時時로 經驗하는 바인 것이다. 한편 臨床實務에 從事하는 一般開業醫에게는 그들의 齒科醫療上의, 患者의 法律的 權利와 義務를 確實히 함으로써 法律的 困難(legal difficulties)에 接하지 않도록 豫防的 法律(preventive law)로서의 法齒學의 常識은 必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實情에 비추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法醫學乃至法齒學에 對한 社會的 認識이 未洽할 뿐만 아니라 齒科醫師自身에게도 아직 이렇다 할 程度의 紹介조차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此際에 法齒學에 對한 原稿 請託을 接하여 筆者는 淺學非才를 不顧하고 一線業務에 從事하고 있다는 使命感에서 多少의 知見을 記하려는 바이다.

### 1) 法醫學, 法齒學이란 어떠한 學問인가?

法醫學은 社會의 治安維持와 福祉增進을 爲한 法律適用上 問題되는 醫學의 諸般事項을 研究하는 學問이며 一名 裁判醫學, 鑑定醫學, 公安醫學으로도 稱하며 歐美에서는 Forensic medicine, Legal, medicine Medical Jurisprudence, Gerichtliche medizin이라고 부르고 있다. 法齒學은 醫學의 法醫學에 對하여 齒醫學의 法齒學으로서 意味를 갖고 있으며 法醫學의 一部門으로서의 從來에 使用되어 온 齒科法醫學에서 脫皮하여 그의 特殊性에서 廣範圍한 分野를 開拓함에 起因한 學問의 獨立을 말하는 것으로서 其根據는 日本國의 東京大學法醫學主任教授 上野正吉博士의 命名에 依하여 通用되고 있다. 그러나 分類上에 있어서 法齒學을 獨自의 樹立할 段階에 이르지 못한 우리나라의 境遇는 實務적으로는 齒科法醫學으로 于先 研究開發할 分

野가 아닌가 생각된다. 即 廣義의 法醫學인 公安醫學에 있어서 特히 臨床醫學의 知識을 應用하여 法醫學上의 問題를 解決하는 臨床法醫學 Clinical jurisprudence을 들수 있으며, 臨床法醫學의 各 分野中 가장 特異의 存在로서의 齒科法醫學 Dental jurisprudence, Forensic odontology, Legal dentistry을 들수 있는 것이다.

이제 齒科學 全體系上의 法齒學의 位置를 考察하면 齒科學을 大別하여 基礎部門과 應用部門으로 分類할 수 있으며, 다시 應用部門은 社會醫學과 臨床齒科學으로 나눌 수 있고 法齒學은 豫防齒科學과 함께 社會齒科學을 構成하고 있는 것이다. 法齒學은 法醫學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基礎的인 事項을 研究하는 基礎法齒學과 法齒學實際面에 當하여 一般齒科學 및 基礎法齒學의 知識 나아가서는 醫學乃至其 以外의 自然科學의 知識을 活用하는 應用法齒學으로 細分할 수도 있다.

要컨대 法醫學 및 法齒學은 法律的 適正한 運營을 圖謀키 爲한 科學搜查의 한 方法으로서 證據(evidence)에 役割을 하는 應用科學의 一分科인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注意를 要하는 點은 法律的 各國間의 相異點과 改廢等의 流動性이 있는 關係로 法齒學 및 法醫學은 應用性의 變移가 있다는 點이며, 其 比重에 있어서도 國家社會의 構造에 따라서 많은 差異가 있어, 人權을 옹호하는 나라일수록 法醫學 및 法齒學이 더욱 發達함으로서 十名의 犯人을 놓쳐도 一名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는 努力이 試圖되고 있는 것이다. 法醫學의 및 法齒學의 諸問題를 取扱함에 있어서 Hofmann-Haberda氏가 指摘한 바와 같이 法醫學 및 法齒學은 民事法 및 刑事法을 運用하는 가운데 發生하되, 오직 醫學 및 齒醫學의 知識에 依하여서만 解決될 수 있는 問題들을 研究하고 解明하려는 學問이므로 醫學的 知識만으로도 完全할 수 없고 法學的 知識만으로도 不足

하며, 兩者를 適切히 相互應用할 必要가 있어, 實務에 接하게 되는 境遇에 齒科醫師들은 이러한 點을 勘察하여야 할 것이다.

### 2) 法醫學, 法齒學의 應用範圍

法醫學은 嚴密히 區別하면 立法·司法 및 行政의 三方面에 걸쳐 그 應用範圍가 매우 廣範圍하나 日常 主로 應用되는 分野는 司法上의 應用이다.

司法上의 應用은 變死者 등의 檢屍 및 解剖를 통한 法醫學의 檢査, 鑑定을 行하는 境遇로서 例를 들면 刑事上으로 殺人·傷害, 業務上의 過失致死·過失致傷 등의 犯罪發生時 搜查上의 根據를 提供하여 犯人檢學 被疑者 및 被告의 罪를 判定하며 刑量을 決定함에 應用되고, 民事上으로 出生·死亡·婚姻·離婚·親生子關係·年齡 및 精神異常等에 關한 問題가 일어났을 境遇에 應用하며 判決의 根據를 確實하게 한다. 한편, 法齒學의 應用範圍를 遡하여 그의 必要性에 따르는 比重을 보면, 法醫學의 諸般事項을 法齒學의 方法에 依하여 解決할 수 있는 境遇가 많고 그 精密度에 있어서 優秀性이 認定되는 境遇가 많다. 特히 俗稱 法醫學은 腐敗와 鬭爭하는 學問이라고 할 程度로 死後變化, 腐敗 및 證據인멸을 爲한 變化 등의 狀況에 있어서 比較的人體 他臟器組織에 比해 變化가 어려운 齒牙 및 齒牙를 中心으로 한 組織은 其 活用性이 높으며 白骨化한 死體에 있어서 個人識別 및 死因規明 死後經過時間 推定의 問題에 있어서의 法齒學의 比重은 周知하는 바와 같은 것이다.

또한 齒牙 및 齒牙를 中心하는 組織自體 및 證據物에 殘存하는 唾液等에서 血液型을 判定하는 方法은 빈번히 利用되며 其 價値가 極히 높고, 親子關係에 關한 法醫學에서의 法齒學은 不可分의 關係가 있다. 科學搜查의 方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近年에 法齒學의 方法으로 “한강 나룻터 女人 殺害事件” “부평 慰安婦殺害事件” 解決의 決定的 端緒를 얻었던 것은 이미 紙上을 遡하여 世人에 널리 알려졌던 事實이며, 그보다 몇 해 전에 “釜山 裸體女人事件”이 搜查難關에 直面했을 때 口腔內 治療狀態와 開業醫 臨床記錄과의 對照에 依하여 劇적으로 事件을 容易하게 解決하였던 事例等은 法齒學의 必要性 및 重要性을 切感케 하는 것이었다.

筆者는 本連載에 있어서 法齒學의 事項을 中心으로 하되 이에 參考 및 基礎가 된다고 볼 수 있는 一般法醫學의 事項을 同時에 相互關聯을 시켜가면서 記載하려 한다.

### 3) 法齒學上의 檢査 및 鑑定

法齒學의 對象은 다음의 五種으로 大別하여 볼 수 있다.

- a) 生體檢査: 咬傷·個人識別·性·年齡
- b) 屍體檢査: 檢屍·咬合型 齒列弓의 形態 充填物 補綴物의 種類, 齒科疾患
- c) 物體檢査: 齒牙에서부터 血液型, 死後 經過時日의 推定, 人獸鑑別 等, 唾液이 묻은 物體
- d) 現場檢査: 義齒 齒藥 及 치술 白骨死體의 齒牙, 犯罪現場의 齒痕等
- e) 書類檢査: 口腔領域에서의 醫療過誤, 齒科醫의 診療簿, 診斷書, X線寫眞.

이들 檢査에 際하여서는 其 檢査所見을 正確하게 記載하여 그 記載을 土臺로 鑑定을 行한다.

#### a) 生體檢査 Examination of the living.

生體에 對한 法齒學의 檢査는 口腔內와 口腔外로 大別된다. 口腔內의 檢査로서는 齒牙의 크기, 形狀, 色, 磨耗의 程度,

損傷——損傷에 있어서는 그의 形狀, 部位, 方向, 程度——齶蝕·缺損齒·奇型齒의 有無와 그의 程度, 그리고 齒列弓의 形狀, 咬合型, 齒石의 附着部位, 量, 性狀 및 唾液의 性狀等을 綿密히 觀察한다. 口腔外의 檢査로서는 齒牙에 依한 損傷 即 咬傷이 問題된다. 그의 境遇는 皮膚에 殘存하고 있는 齒痕의 部位, 程度, 形狀, 크기, 種類, 數, 配列의 特徵 및 程度를 確認하며, 可能한 限 早期에 寫眞을 찍어두도록 하며 石膏等으로 原型을 保存할 수 있는 印象을 彩得해 두도록 하는 것이 좋다. 法齒學의 生體檢査는 많은 境遇가 裁判事件의 關係되며 이 때 다음의 두가지 事項을 念頭에 두고 施行하여야 한다.

첫째, 他覺의 徵候를 重要視하여야 한다. 被檢者는 自身에게 不利한 點은 숨기려하고 반면에 自身에게 利益이 된다고 生覺되는 點은 誇大하게 主張하고 나서는 傾向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被檢者의 檢査에 있어서는 慎重히 他覺의 方法을 重要視하면서 行하는 것이 切實히 要求된다.

둘째, 損傷과 疾病을 診斷檢査함에 있어서 局所와 同時에 全身을 檢査하여야 한다. 때때로 局所의 重點을 두고 檢査하는 境遇에는 往往 身體의 他部皮膚에 있는 重要한 所見을 看過함으로써 損傷에 對한 判斷을 그릇칠 우려가 있다.

齒科醫師는 아진까지 口腔內만 檢査하는 習慣이 있어서 全身의 觀察을 忘覺하는 傾向이 크나 全身의 所見과 局所의 觀察의 有機的 觀察法은 臨床的으로는 勿論 法齒學의 觀察에 있어서는 切實히 要望되는 事項이 된다(다음號는 法齒學의 對象에 對하여 記述함).